산림재난방지법안 (정희용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11 발의연월일: 2024. 6. 7.

발 의 자:정희용·백종헌·이인석

구자근 • 박덕흠 • 김선교

송언석 · 장동혁 · 김도읍

곽규택 · 임이자 · 김종양

주호영 · 강승규 · 김은혜

김성원 • 조승화 • 조지연

윤재옥 • 배현진 • 신상범

의원(21인)

제안이유

최근 기후위기에 따른 기상이변과 지속적인 산림개발로 산불·산사 태·산림병해충과 같은 산림재난은 대형화되어 가고 있고, 이로 인하 여 국민의 삶과 산림 생태계에 악영향이 우려되고 있음.

따라서 다양·대형화 추세에 있는 산림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 신체와 재산을 보호하고 산림을 지키기 위하여 산림재난으로 인한 피 해의 예방·대응 및 복구·복원을 위한 새로운 법률 체계 마련이 필 요한 상황임.

한편, 「산림보호법」에는 산불·산사태 예방, 산불진화 통합지휘, 산사태취약지역 지정·관리 및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명령 등의 규정 은 마련되어 있으나, 산림재난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대응할 수 있는 체계와 산림재난을 통합적으로 관리·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 재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

여기에 현행 「산림보호법」은 산림재해 외에 산림보호 및 보호구역의 지정·관리, 보호수의 지정·관리, 입산통제구역 설정 등 전통적인 산림보호·통제 제도와 수목 진료, 나무의사와 같은 새로운 제도등 다양하고 복잡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어 산림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음.

이에 「산림보호법」의 산림재난방지 체계를 새로운 법률에 담아 재정비하는 한편, 기존 법에서 누락되었던 산사태·산림병해충 예방, 주민 대피명령 제도, 산림재난방지 기반시설의 설치, 산림재난 관련연구·조사 및 국제협력 등을 추가하고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 설립 등을 통해 산림재난에 체계적·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이 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이 법은 산림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산림을 지키기 위하여 산림재난으로 인한 피해의 예방·대응 및 복 구·복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나. 체계적인 산림재난방지를 위한 산림재난방지 기본계획, 시·도계획, 시·군·구계획과 시행계획, 시·도시행계획 및 시·군·구시행

계획의 수립ㆍ시행 근거를 마련함(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

- 다. 산림재난 위험 예측력을 높이기 위하여 산불, 산사태 및 산림병해 충에 관한 정보가 포함된 산림재난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함(안 제11조).
- 라. 산림청장은 산림재난정보의 수집·전파, 상황관리, 산림재난발생시 초동조치 및 지휘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중앙산림재난상황실을 설치·운영하여야 하고,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효율적인산림재난 피해의 예방과 대응을 위하여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산불재난특수진화대, 산사태현장예방단 및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을 산림재난대응단으로 통합하여 구성·운영할 수 있음(안 제12조 및 제13조).
- 마. 산불·산사태·병해충 예방을 위한 분야별 산림재난에 관한 대책 본부의 설치, 예방·예찰 활동, 행위 제한 및 취약지역의 지정·해 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4조부터 제27조까지).
- 바. 산불의 진화 및 산사태·산림병해충 대응을 위한 분야별 산림재난 에 관한 경보 발령, 신고 및 보고, 대응 단계, 긴급점검, 대응팀의 운영, 방제구역의 지정·해제 및 방제사업 등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28조부터 제47조까지).
- 사. 산불·산사태·산림병해충의 조사, 피해지에 대한 복구·복원 및 각 산림재난에 대한 대응평가·분석 등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48조 부터 제56조까지).

- 아. 산림재난방지를 위한 기반시설의 설치, 산악기상관측망의 구축· 운영, 산림항공기의 운용, 전문인력의 양성, 연구개발 및 국제협력 등을 규정함(안 제57조부터 제61조까지).
- 자. 산림재난방지를 위한 연구·조사, 교육 및 기술·정보의 국제교류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을 설립하고, 공단의 정관, 임직원, 임원의 결격사유, 사업, 공단의 운영비 및 예산·결산 등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62조부터 제70조까지).
- 차. 산림재난방지 중 발생하는 사상자에 대한 보상, 산주의 산림재난 보험 가입, 신고자에 대한 포상, 타인의 토지에 대한 출입, 권한의 위임·위탁 및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등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71조부터 제78조까지).
- 카. 타인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자에 대한 처벌 등 이 법 위반자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 처분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79조 및 제80조).

산림재난방지법안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이 법은 산림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산림을 지키기 위하여 산림재난으로 인한 피해의 예방· 대응 및 복구·복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산림재난"이란 자연적 또는 인위적으로 발생하여 산림 등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산불, 산사태 및 산림병해충을 말한다.
 - 2. "산불"이란 자연적 또는 인위적으로 발생한 불에 의하여 산림이 타는 것을 말한다.
 - 3. "산사태"란 「사방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산사태를 말한다.
 - 4. "산림병해충"이란 산림에 있는 식물과 산림이 아닌 지역에 있는 수목(「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농작물은 제외한다)에 해를 끼치는 병과 해충을 말한다.
 - 5. "산림재난방지"란 산림재난으로 발생하거나 예측되는 피해의 예 방과 대응을 위한 다음 각 목의 활동을 말한다.
 - 가. 산불을 예방하고 진화하는 모든 활동(이하 "산불방지"라 한다)

- 나. 산사태의 발생을 예방하고 대응하는 모든 활동(이하 "산사태 방지"라 한다)
- 다. 산림병해충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한 지역에 대하여 발생 여부, 발생 정도, 피해 상황 등을 조사하거나 진단하는 모든 활동(이하 "산림병해충 예찰"이라 한다)과 산림병해충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예방하거나 이미 발생한 산림병해충을 약화시키거나 제거하는 모든 활동(이하 "산림병해충 방제"라 한다)
- 6. "산사태취약지역"이란 산사태로 인하여 인명 및 재산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으로 제20조에 따라 지정·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에 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가.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급경 사지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붕괴위험지역
 - 나. 「도로법」 제10조에 따른 도로
 - 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시설물
- 7. "산림재난방지기관"이란 산림재난방지를 계획·실행하는 기관으로서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 가. 산림청
 - 나. 산림항공본부 및 산림항공관리소
 - 다. 지역산불관리기관: 산불의 예방·진화를 하는 지방자치단체, 지방산림청 및 국유림관리소

- 라. 지역산사태관리기관: 산사태의 예방·대응을 하는 지방자치단 체, 지방산림청 및 국유림관리소
- 마. 지역산림병해충예찰·방제기관: 산림병해충의 예찰·방제를 하는 지방자치단체, 산림청 소속기관
- 8. "산림재난방지유관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 가. 산불방지유관기관: 산불방지 업무와 관련되는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 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 나. 산사태방지유관기관: 산사태예방 업무와 관련되는 중앙행정기 관과 그 소속 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 다. 산림병해충유관기관: 산림병해충 예찰·방제 업무와 관련되는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 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 9. "산림재난 위험도평가"란 산림재난으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피해 예측과 피해저감 효과를 위하여 기후·기상 등 자연 정보와 거주·교통 등 생활적 정보 및 지형·임상·토질 등 산지 정보를 활용하여 위험도를 분석·예측·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 10. "산림재난 위험지도"란 산림재난 위험도평가와 공간정보 기술을 활용하여 산림재난 위험등급을 표현한 지도를 말한다.
- 11. "산림재난정보시스템"이란 산림재난 관련 정보와 자료를 수집· 가공·저장·검색, 표출, 송수신 및 활용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된 기기·프로그램 및 데이터베이스 등의 결합체를 말한다.
- 12. "복구"란 산림재난 피해지를 인공구조물 설치와 식물의 파종・

식재 등으로 훼손 이전의 상태로 시급히 안정화시키는 활동을 말한다.

- 13. "복원"이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 10호에 따른 산림복원을 말한다.
-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산림재 난 피해의 예측・예방・대비 및 대응・복구・복원하고 산림재난으 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한 연구 및 기술개발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 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범위) 이 법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적용한다.
 - 1. 산불 및 산사태에 관한 규정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산림에 대하여 적용한다.
 - 2. 산림병해충에 관한 규정은 제1호에 따른 산림과 산림이 아닌 지역의 수목(「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농작물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5조(산림의 구분과 산림의 관할 행정청) 산림의 구분과 산림별 관할 행정청에 대하여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 조 및 제5조를 적용한다.
-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산림재난의 예방과 대응, 산림재난 피해지의 복구·복원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계획 수립 및 대비

- 제7조(산림재난방지 기본계획) ① 산림청장은 체계적인 산림재난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산림재난방지 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 1. 산림재난방지의 목표 및 추진 방향
 - 2. 산림재난방지 인력ㆍ시설ㆍ장비 등의 확충에 관한 사항
 - 3. 산림재난방지 관련 법령의 정비 등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 4. 산림재난방지를 위한 교육훈련, 연구 및 협력 요청에 관한 사항
 - 5. 산림재난 피해지의 복구·복원에 관한 사항
 - 6. 그 밖에 산림재난방지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산림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표하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 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 여야 한다.
 - ③ 기본계획은 산림재난별로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 ④ 산림청장은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산림재 난방지유관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산림재난방지유관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⑤ 그 밖에 기본계획의 수립·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8조(산림재난방지 지역계획) ①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관할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산림재난방지 시·도계획(이하 "시·도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시·도계획에 따라 관할지역의특성을 고려하여 산림재난방지 시·군·구계획(이하 "시·군·구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 ② 시·도지사가 시·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이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이 시·군·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이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시·도계획 및 시·군·구계획은 산림재난별로 수립·시행할 수 있다.
 - ④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계획 및 시·군·구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산림재난방지유관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산림재난방지유관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제9조(산림재난방지 시행계획) ① 산림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연도별 산림재난방지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 ② 시·도지사는 시·도계획에 따라 연도별 산림재난방지 시·도시 행계획(이하 "시·도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시·군·구계획에 따라 연도별 산림재난 방지 시·군·구시행계획(이하 "시·군·구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④ 시행계획, 시·도시행계획, 시·군·구시행계획은 산림재난별로 수립·시행할 수 있다.
- ⑤ 그 밖에 시행계획, 시·도시행계획, 시·군·구시행계획의 수립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0조(산림재난 위험도평가·위험지도) ① 산림청장은 산림재난으로 인한 피해예측과 피해저감을 위하여 산림재난 위험도평가를 실행하 여야 한다.
 - ② 산림청장은 산림재난 위험도평가 등을 반영한 산림재난 위험지 도를 작성하여 지역산불관리기관, 지역산사태관리기관 및 지역산림 병해충예찰·방제기관의 장에게 배포하여야 한다.
 - ③ 산림재난 위험도평가 및 산림재난 위험지도는 산림재난별로 실행하거나 작성할 수 있다.
 - ④ 산림청장은 산림재난 위험도평가를 산림재난방지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역산불관리기관, 지역산사태관리기관 및 지역산림병해충예

- 찰 · 방제기관의 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 ⑤ 그 밖에 산림재난 위험도평가의 방법・내용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1조(산림재난정보시스템 구축) ①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정보가 포함된 산림재난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 1. 산불위험예보, 산불상황관제, 산불확산예측 등 산불관련 정보
 - 2. 산사태예측정보, 산사태위험지도 등 산사태 관련 정보
 - 3. 산림병해충의 발생 및 방제 정보 등 산림병해충 관련 정보
 - 4. 기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산림재난 관련 정보
 - ②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산림재난정보시스템을 산림재난예방·대응·복구 등에 활용하여야 한다.
 - ③ 산림청장은 지역산불관리기관, 지역산사태관리기관, 지역산림병 해충예찰·방제기관 및 산림재난방지유관기관의 장에게 산림재난 예측정보 등을 구축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요청 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④ 그 밖에 산림재난정보시스템의 구축 범위 및 운영 절차 등에 필 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2조(산림재난상황실) ① 산림청장은 산림재난정보의 수집·전파, 상황관리, 산림재난발생 시 초동조치 및 지휘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상시 중앙산림재난상황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 ② 제2조제7호다목부터 마목까지의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관할 지역의 산림재난에 관한 상황관리를 위하여 산림재난상황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른 산림재난상황실은 산림재난별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④ 제2항에 따른 산림재난상황실은 중앙산림재난상황실 및 다른 산 림재난상황실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재난관리정보를 공 유하여야 한다.
- 제13조(산림재난대응단)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효율적인 산림재난 피해의 예방과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36조제2항에 따른 산불전문예방진화대 및 산불재난특수진화대, 제39조제2항에 따른 산사 태현장예방단 및 제47조제2항에 따른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을 산림 재난대응단으로 통합하여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3장 산림재난 예방 제1절 산불 예방

제14조(산불방지대책본부 설치 등) ① 산림청장은 산불조심기간 동안 시행계획의 체계적 추진과 산불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마련 하기 위하여 산림청에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 ② 지역산불관리기관의 장은 산불조심기간 동안 시·도시행계획, 시·군·구시행계획의 체계적 추진과 산불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마련하기 위하여 그 지역산불관리기관에 지역산불방지대책본부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 ③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의 장은 산림청장이 되고, 지역산불방지대 책본부의 장은 지역산불관리기관의 장이 된다.
- ④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의 장과 지역산불방지대책본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불방지유관기관으로 구성된 산불방지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 ⑤ 그 밖에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와 지역산불방지대책본부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5조(산불 예방 등) ① 산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은 산불의 예방과 진화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산불이 발생하면 진화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② 산림청장은 산불의 효율적인 예방·진화체계를 마련하여야 하며, 지역산불관리기관의 장은 이에 따라 산불을 예방하고 산불이 발생 하면 진화하여야 한다.
 - ③ 산림청장 또는 지역산불관리기관의 장은 산불에 대비하여 산불 예방과 진화에 필요한 인력, 장비 및 예산을 확보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림청장은 지방자치단체가 산불진화 헬리콥 터 등 산불진화장비를 도입하는 경우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④ 산림청장 또는 지역산불관리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산불 예 방과 진화에 필요한 장비 등이 정상 가동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 ⑤ 산림청장 또는 지역산불관리기관의 장은 효율적인 산불 예방 및 진화를 위하여 산불방지에 관한 연구·조사 및 농림축산식품부령으 로 정하는 산불방지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 ⑥ 지역산불관리기관의 장은 산림재난 위험도평가에 따라 산불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하 "산불취약지역"이라 한다)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초로 「산림보호법」 제15조에 따른입산통제구역으로 지정하거나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산불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⑦ 제3항 후단에 따른 산불진화장비의 종류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제16조(산불 예방을 위한 행위 제한) ① 누구든지 산림 또는 농림축산 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산림인접지역(산림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위 치한 토지로서 건물의 부속토지는 제외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는 행위
 - 2.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
 - 3.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풍등 등 소형열기구를 날리

는 행위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 1. 산불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불이 탈 가능성이 있는 물질을 제거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
- 2. 야영이 허가된 야영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인 경우
-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 산림청장은 제2항제1호에 따른 허가를 할 때 산불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조건으로 허가할 수 있으며, 허가를 받은 자는 불을 놓기 전에 관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및 인접한 산림의 소유 자·사용자 또는 관리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 ④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 산림청장은 산불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산림에 들어 가는 사람이 화기(火器), 인화(引火) 물질 및 발화(發火) 물질을 지 니는 것을 금지하여야 한다.

제2절 산사태 예방

- 제17조(산사태예방지원본부 설치·운영) ① 산림청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정하는 여름철 재해대책기간 동안 시행계획의 체계적 추진과 산사태 발생위험 정보의 수집·전파, 신속한 대응 및 상황관리 등을 위하여 산림청장 소속으로 산사태예방지원본부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 ② 산사태예방지원본부의 장은 산림청장이 된다.
 - ③ 그 밖에 산사태예방지원본부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8조(산사태 예방 등) ① 산림 및 산림과 잇닿은 토지의 소유자·점 유자 또는 관리인(이하 "산사태 관계인"이라 한다)은 산사태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② 산림청장은 효율적인 산사태 예방·대응·조사·복구 체계를 구축하여야 하며, 지역산사태관리기관의 장은 이에 따라 산사태 예방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③ 지역산사태관리기관의 장은 산사태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인력, 장비 및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림청장은 지방자 치단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9조(산사태 발생 우려지역에 대한 조사) ① 산림청장은 산림재난 위험도평가 결과에 따라 전국을 대상으로 5년마다 산사태의 발생 우려지역에 대한 기초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지역산사태관리기 관의 장 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② 지역산사태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 결과에 따라 5년마다 산사태의 발생 우려지역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의 내용·방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제20조(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및 해제) ① 지역산사태관리기관(국유림의 경우 지방산림청 또는 국유림관리소를 말하며, 공·사유림의 경우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장은 산사태 발생의 우려가 있는 지역(산림과 연접하고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예방시설을 설치하는 등 산사태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 및 산림자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19조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기초로 산사태취약지역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1조에 따른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의 심의 및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야 한다.
 - ② 지역산사태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산사태취약지역을 지정하려면 지정 예정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고, 산사태 관계인과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 1. 지정사유
 - 2. 지정대상지의 소재와 면적
 - 3. 지정에 관한 이의신청기간

- 4.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③ 제1항에 따른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과 관련하여 산사태 관계인은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기간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④ 지역산사태관리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을 하고 지체 없이 그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 ⑤ 지역산사태관리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의 이유가 없다고 인정하면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고시하고, 산사태 관계인 및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고시한 지역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산사태 관계인의 주소·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고시로 이를 갈음한다.
- ⑥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은 제5항에 따라 고시한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 ① 지역산사태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산사태취약지역이 사방댐 등 「사방사업법」 제3조에 따른 사방사업의 시행 등으로 인하여 그 지정 목적이 달성되었을 경우에는 이를 해제할 수있다.
- ⑧ 지역산사태관리기관의 장은 제5항 또는 제7항에 따라 산사태취

- 약지역을 지정·고시하거나 해제한 경우에는 관할 시·도지사를 거쳐 산림청장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⑨ 지역산사태관리기관의 장은 산사태취약지역에 위험을 알리는 표 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 ① 누구든지 제9항에 따른 위험표지를 설치한 자의 허락 없이 이를 이전하거나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① 산림청장 및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지역산사태관리기관의 장이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을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고시하도록 통보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역산사태관리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② 그 밖에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고시와 위험표지 설치 등에 필 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제21조(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① 지방산림청장은 제20조에 따른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지방산림청장 소속으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를 구성 ·운영한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0조에 따른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 제22조(산사태취약지역에서 행위 제한 등) 누구든지 제20조제5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산사태취약지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산사태의 예방을 위한 사방댐 등 「사방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방시설을 훼손하는 행위
 - 2. 산사태의 예방을 위한 사방댐 등 「사방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방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것을 거부 또는 방해하는 행위
- 제23조(산사태취약지역 관리) ① 지역산사태관리기관의 장은 산사태취약지역의 산사태예방을 위하여 「사방사업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사방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하여야 하며, 산사태취약지역에 대하여 연 2회 이상 현지점검을 실시하고 응급조치 및 보수·보강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현지점검 실시 결과 산사태 발생의 우려가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사태 관계인에게 관련 시설·토지 등의 사용을 제한·금지하거나 보수·보강 또는 제거 등 안전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
 - ③ 제2항의 안전조치 명령을 받은 산사태 관계인은 안전조치를 이행하고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과를 관할 지역산사태관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④ 지역산사태관리기관의 장은 제2항의 안전조치 명령을 받은 자가

-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신하여 필요한 안전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대집행법」을 준용한다.
- 제24조(산사태취약지역 등 토지 매수·교환) ① 지역산사태관리기관의 장은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토지소유자와 협의하거나 토지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산사태취약지역의 산지(입목·죽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사태취약지역 인근의 토지를 예산의 범위에서 매수하거나 국유림 또는 공유림과 교환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토지 매수·교환의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유재산법」,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준용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토지를 매수·교환하려는 경우의 매수·교환 가격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정된 가격으로 한다.

제3절 산림병해충 예방

제25조(산림병해충 예찰·방제대책본부) ① 산림청장은 산림병해충 예찰(이하 "예찰"이라 한다)과 산림병해충 방제(이하 "방제"라 한다)에 필요한 지원을 하기 위하여 산림청에 중앙 예찰·방제대책본부(이하 "중앙예찰·방제대책본부"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산림청장 및 국유림관리소장은 예찰·방 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 예찰·방제대책본부(이하 "지역예찰·방제대책본부"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 ③ 중앙예찰·방제대책본부의 본부장은 산림청장이 되고, 지역예찰 ·방제대책본부의 본부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산림청장 및 국 유림관리소장이 된다.
- ④ 중앙예찰·방제대책본부와 지역예찰·방제대책본부의 구성·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6조(산림병해충 예방 등) ① 산림병해충 예방을 위하여 산림 및 산림이 아닌 지역에 있는 수목(「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농작물은 제외한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은 산림병해충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② 산림청장은 효율적인 산림병해충 예방을 위한 체계를 구축하여 야 하며, 지역산림병해충예찰·방제기관의 장은 이에 따라 산림병해충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③ 지역산림병해충예찰・방제기관의 장은 산림병해충 예방을 위하여 인력, 장비 및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림청장은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27조(예찰) ① 산림청장 또는 지역산림병해충예찰·방제기관의 장은 산림병해충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한 지역에 대하여 예찰을 하여야 한다.

- ② 산림청장은 산림재난 위험도평가 결과에 따라 산림병해충 발생위험지역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예찰의 방법·시기, 예찰 결과에 대한 조치 사항과 실태조사의 내용·방법 등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4장 산림재난 대응 등 제1절 산불 진화 등

- 제28조(산불조심기간 설정 등) ① 산림청장은 산림에 있는 불이 탈 가능성이 있는 물질의 상태와 기상 상태에 따라 산불 발생의 위험 정도를 나타내는 지수(이하 "산불위험지수"라 한다)를 계산하여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
 - ②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절별로 산불위험지수가 높아 산불이 발생할 위험이 높은 기간을 산불조심기간으로 정하고, 산불조심기간 중 산불방지에 관한 특별한 대책이 필요한 기간을 산불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할 수 있다.
 - ③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의 산불조심기간이나 산불특별대책기간을 정하면 그 내용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산불조심기간이나 산불특별대책기간 을 변경하거나 해제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제29조(산불경보 발령 및 조치) ① 산림청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이하 "산불경보"라 한다)를 발령할 수 있다. 이 경우 산불경보의 발령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② 산림청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산림청 소속 기관의 장 또는 국립 공원공단 소속 공원사무소의 장은 산불경보가 발령되면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산불경보별 조치기준에 따라 입산 통제 등 필요한 조치 를 하여야 한다.
- 제30조(산불 신고 및 보고) ① 산림이나 산림 인접지역에서 불씨를 보 거나 산불을 발견한 사람은 지체 없이 산림청, 지역산불관리기관 또 는 산불방지유관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 ② 산림청 또는 산불방지유관기관이 산불 발생 신고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 지역산불관리기관에 알려야 한다.
 - ③ 산불방지유관기관으로부터 산불 발생 신고를 통보받은 관할 지역산불관리기관은 현장에 신속하게 출동하여 산불 진화에 필요한활동을 하여야 한다.
 - ④ 그 밖에 산불 발생 상황 보고 및 산불피해 보고 등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제31조(산불대응 단계 발령) ① 산림청장은 산불 진화 자원의 신속한 동원을 위하여 발생된 산불의 피해 면적, 기상 상태 등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불대응 단계를 발령하고, 해당 및 인접 지

- 역의 지역산불관리기관의 장에게 산불 진화 자원을 동원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산림청장은 발령 사항을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동원 요청을 받은 지역산불관리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산불대응 단계의 발령 방법 및 동원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제32조(대피명령 및 강제대피조치) 산림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 및 국유림관리소장은 산불이 발생한 경우에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나 재산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50조제2항에 따른 지역통제단장에게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제42조에 따른 강제대고치를 요청할 수 있다.
- 제33조(산불 진화 통합지휘)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군수·구청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은 그 관할 지역에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중·소형 산불이 발생하면 그 산불의 진화를 통합적으로 지휘(이하 "통합지휘"라 한다)한다. 다만, 산불이 국유림·공유림 또는 사유림에 걸쳐 발생하면 특별자치시장·특별 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통합지휘하여야 한다.
 - ② 시·도지사는 산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대형 산불로 확산되면 그 산불의 진화를 통합지휘하여야 한다. 다만,

관할 지역 중 두 군데 이상에서 대형 산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 군데 이상의 통합지휘권을 시장· 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③ 산불이 둘 이상의 시·군·구에 걸쳐 발생하면 시·도지사가 통합지휘하고,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 걸쳐 발생하면 산림청장이 통합지휘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또는 산림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합지휘권을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 ④ 산림청장은 산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산불로 확산되어 국가재난으로 확대될 우려가 있는 대형산불이 발생한경우에는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산림청장이 그 산불의 진화를 통합지휘할 수 있다.
- 제34조(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 설치·운영) ① 제33조에 따라 산불진화를 통합지휘하는 산림청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은 산불이 발생한 현장에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를 설치하여 산불진화를 지휘하고 진화대원에게 진화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 ②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의 장(이하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장"이라 한다)은 산불현장에 지원된 산불방지유관기관과의 통합지휘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산불방지유관기관의 관계관을 소집하여 산불현장대책회의를 개최하고 기관별 임무를 부여하여야 한다.
 - ③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의 구성, 임무, 보고,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제35조(협조) ① 산림청장 또는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장은 산불진화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의장에게 산불진화, 현장 통제 등에 필요한 장비 및 인력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기관 및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없으면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1. 소방관서(「소방기본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소방지원활동에 한정한다)
 - 2. 경찰관서
 - 3. 군부대
 - 4. 국가유산청 및 그 소속기관
 - 5. 국립공원공단 및 그 소속 공원사무소(하부조직을 포함한다)
 - 6. 기상관서
 -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림 관련 기관 및 단체
 - ② 제1항에 따라 산불현장에 파견된 자는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장의 지휘에 따라 주어진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장이 협조를 요청하는 대상 ·방법·절차·규모 및 경비의 부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
- 제36조(산불진화단 등 설치) ① 산림청장 또는 지역산불관리기관의 장 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교육을 마친 공무원(「청원산림보

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원산림보호직원을 포함한다)으로 조직된 산불진화단을 설치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할 수 있다.

- 1. 산불의 진화
- 2.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 및 산불재난특수진화대원의 지휘·통솔
- 3.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장의 지휘 보좌
- 4. 산불진화전략 수립을 위한 기초정보 수집과 전달
- 5. 산불의 예방과 진화에 대한 대국민 교육과 홍보
- ② 산림청장 또는 지역산불관리기관의 장은 산불방지를 위하여 관할 지역의 주민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산불진화 교육과 훈련을 받은 사람으로 산불전문예방진화대 및 산불재난특수진화대를 구성하여 설치할 수 있다.
- ③ 산림청장 또는 지역산불관리기관의 장은 관할 지역의 산림사업에 종사하거나 지역의 주민 중에서 산불방지 업무를 희망하는 사람으로 산불자율진화대를 구성하여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산불자율진화대에 구성된 사람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산불진화 교육과 훈련을 받고 산불방지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산불진화단,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산불재난특수진화대 및 산불자율진화대의 구성·운영 등 필요한 사 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절 산사태 대응

- 제37조(산사태 조심기간 설정 등) ①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사태가 발생할 위험이 높은 기간을 산사태 조심기간으로 정하고, 산사태 조심기간 중 산사태방지에 관한 특별한 대책이 필요한 기간을 산사태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할 수 있다.
 - ②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산사태 조심기간이나 산사태 특별대책기간을 정하면 그 내용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산사태 조심기간이나 산사태 특별대책기간을 변경하거나 해제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제38조(산사태 신고 및 보고) ① 산림이나 산림과 잇닿은 토지에서 산 사태를 보거나 산사태의 징후를 감지한 사람은 지체 없이 산림청, 지역산사태관리기관 또는 산사태방지유관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 ② 산림청 또는 산사태방지유관기관이 산사태 신고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지역산사태관리기관에 알려야 한다.
 - ③ 산사대 신고를 접수한 관할 지역산사대관리기관은 현장 상황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응급복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④ 그 밖에 산사태 발생 상황보고 및 피해보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제39조(산사태대응팀 설치) ① 산림청장 및 지역산사태관리기관의 장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공무원(「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원산림보호직원을 포함한다)으로 조직된 산사태대응팀을 설치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1. 산사태의 예방 및 대응 활동
 - 2. 산사태 예방을 위한 사방댐 등 「사방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방시설의 설치 및 관리
 - 3.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4. 제2항에 따른 산사태 현장 예방단 구성 및 운영
 - 5. 산사태예방대책의 수립을 위한 기초정보 수집과 전달
 - 6. 산사태의 예방과 대응에 대한 지역주민 교육 및 홍보
 - ② 지역산사태관리기관의 장은 산사태의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사태현장예방단을 구성·운영할 수있다.
- 제40조(산사태 위기경보 발령 및 조치 등) ① 산림청장은 산사태예측 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산사태관리기관의 장 등에게 제공할 수 있다.
 - ② 산림청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산사태위기경보를 발령할 수 있다.
 - ③ 산림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 및 국유림관리소장은 산사태가 발

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나 재산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50조제2항에 따른 지역통제단장에게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제42조에 따른 강제대피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 ④ 제2항에 따른 산사태위기경보의 발령기준 및 조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41조(산사태 긴급점검) ① 산림청장 또는 지역산사태관리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지역에 산사태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당 시설 및 지역을 관리하고 있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포함한다)에게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으로 하여금 산사태 긴급점검(이하 "긴급점검"이라 한다)을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긴급점검을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긴급점검을 하는 공무원 또는 직원은 관계인에게 필요한 질문을 하거나 관계 서류 등을 열람할 수 있다.
 - ④ 제1항에 따라 긴급점검을 하는 공무원 또는 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 ⑤ 제1항에 따라 긴급점검을 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그 결과를 산림청장 또는 지역산사태관리기관의 장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긴급점검의 절차 및 방법, 긴급점검 결과의 기록· 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절 산림병해충 대응 등

- 제42조(산림병해충 신고 및 보고) ① 산림에 있는 식물이나 산림이 아닌 지역에 있는 수목(「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농작물은 제외한다)에서 산림병해충을 발견한 사람은 지체 없이 산림청, 지역산림병해충예찰·방제기관 또는 산림병해충유관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 ② 산림청 또는 산림병해충유관기관이 산림병해충 신고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지역산림병해충예찰·방제기관에 알려야 한다.
 - ③ 산림병해충 신고를 접수한 관할 지역산림병해충예찰·방제기관 은 현장 상황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되지 아니 하도록 응급복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④ 그 밖에 산림병해충 발생 신고 및 보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 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제43조(산림병해충 방제명령) ① 산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은 산림병해충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하였을 때에는 예찰 및 방제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② 산림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산림병해충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하였을 때에는 예찰·방제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③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산림병해 충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하였을 때에는 산림소유자, 산림관리자, 산림사업 종사자, 수목(樹木)의 소유자 또는 판매자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명령을 받은 자는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명령에 따라야 한다.
- 1. 산림병해충이 있는 수목이나 가지 또는 뿌리 등의 제거
- 2. 산림병해충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한 산림용 종묘, 베어낸 나무, 조경용 수목, 뗴, 토석 등의 이동 제한이나 사용 금지
- 3. 산림병해충을 옮기거나 피해를 일으키는 곤충 등 동물의 방제나 병해충의 피해를 확산시키는 식물의 제거
- 4. 산림병해충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한 종묘ㆍ토양의 소독
- ④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제3항제2호에 따라 산림용 종묘, 베어낸 나무, 조경용 수목 등의 이동 제한이나 사용 금지를 명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해당 기관의 게시판 및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1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 ⑤ 제3항제2호에 따른 이동 제한이나 사용 금지의 명령을 받은 자가 이동 제한 또는 사용 금지의 해제를 신청하면 방제가 완료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이동 제한이나 사용 금지를 해제할 수 있다.

- 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제3항 각호의 조치이행에 따라 발생한 비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 ⑦ 그 밖에 방제 완료의 인정, 이동 제한 또는 사용 금지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제44조(방제) ① 지역산림병해충예찰·방제기관의 장이 방제를 하려면 사업 시작 14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게 방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우선 방제를 한 후에 공고할 수 있다.
 - 1. 방제 일시 및 대상 지역
 - 2. 방제대상 병해충의 종류
 - 3. 방제의 방법과 내용
 - 4. 그 밖에 방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 ② 제1항에 따른 방제작업 결과에 대한 점검과 조치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③ 방제 방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5조(방제사업 설계·감리) ① 지역산림병해충예찰·방제기관의 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방제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설계·감리를 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설계·감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할 수 있다.

- 1. 「기술사법」에 따라 산림 분야 사무소를 개설한 기술사
- 2.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산림전문분야 엔지니어링사업 자
-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③ 방제사업을 설계하거나 감리하는 자는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맞게 설계·감리하여야 한다.
- ④ 방제사업의 감리자는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그 밖의 관계 법령을 위반한 사항을 발견하거나 방제사업 시공자가 설계대로 방제사업을 하지 아니하면 방제사업 시공자에게 시정하거나 재시공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 ⑤ 방제사업의 감리자는 방제사업 시공자가 제4항의 요청에 따르지아니하면 서면으로 그 방제사업을 중지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경우 공사 중지를 요청받은 방제사업 시공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공사를 중지하여야 한다.
- ⑥ 방제사업의 설계·감리의 기준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제46조(산림병해충 특별방제구역 지정·해제 등) ① 산림청장은 산림 병해충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하게 예찰·방제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산림병해충 특별방제구역(이하 "특별방제구역"이라 한 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 ② 산림청장이 제1항에 따라 특별방제구역을 지정하면 그 지정 내

용을 고시하고, 해당 산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와 그 특별 방제구역을 관할하는 지역산림병해충예찰·방제기관의 장에게 알려 야 한다.

- ③ 지역산림병해충예찰·방제기관의 장은 특별방제구역에서 신속하 게 예찰·방제하기 위하여 산림병해충에 감염된 나무를 긴급하게 베어내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찰·방제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④ 산림청장은 특별방제구역의 지정 목적이 달성되었거나 계속 둘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면 그 지정을 해제하고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한다.
- ⑤ 특별방제구역의 지정 및 관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 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제47조(산림병해충대응팀 등 설치) ① 산림청장 및 지역산림병해충예 찰·방제기관의 장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공무원(「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원산림보호직원을 포함한다)으로 조직된 산림병해충대응팀을 설치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1. 예찰 및 방제 활동
 - 2. 예찰 · 방제 사업의 현장지도
 - 3. 제2항에 따른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 4. 예찰・방제 대책의 수립을 위한 기초정보 수집과 전달

- 5. 예찰 · 방제를 위한 대국민 교육과 홍보
- ② 산림청장 및 지역산림병해충예찰·방제기관의 장은 신속한 예찰 ·방제를 위하여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른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5장 산림재난 조사 및 복구 제1절 산불 조사·복구

- 제48조(산불 조사) ① 산림청장 또는 지역산불관리기관의 장은 모든 산불피해지에 대하여 산불 원인과 산불피해 현황 등을 파악하기 위 하여 자료의 수집, 이해관계인 등에 대한 질문, 현장확인, 감식·감 정·실험 등에 관한 조사(이하 "산불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 다.
 - ② 산림청장 또는 지역산불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산불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불전문조사반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산불조사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49조(산불피해지 복구 등) 산림청장 또는 지역산불관리기관의 장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불피해지를 복구하거나

산림복원계획을 세워 시행하여야 한다.

- 제50조(산불 대응분석·평가) ① 산림청장은 산불이 발생한 지역의 산불 대응의 문제점, 개선 방안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분석·평가하여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고 지역산불관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분석·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지역산불관리기관의 장은 그 결과를 관할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다음 연도 시·도시 행계획 및 시·군·구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2절 산사태 조사 · 복구

- 제51조(산사태 조사) ① 산림청장 또는 지역산사태관리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사태피해지에 대하여 산사태 원인과 피해 현황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② 산림청장 또는 지역산사태 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사태조사반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 제52조(산사태 발생지 복구) 산림청장 또는 지역산사태관리기관의 장 은 농림축산식품부렁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사태 발생지를 복구하거나 산림복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53조(산사태 대응분석ㆍ평가) ① 산림청장은 산사태가 발생한 지역

에 대하여 산사태 대응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석·평가하여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고, 지역산사태관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분석·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지역산사태관리기관의 장은 그 결과를 관할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다음 연도 시·도시행계획 및 시·군·구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3절 산림병해충 조사

- 제54조(산림병해충 조사) ① 산림청장 또는 지역산림병해충예찰·방제 기관의 장은 산림병해충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 산림병해충 종류별 ·지역별·피해도별 산림병해충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산림병해충 조사 방법 및 보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제55조(방제효과 조사) ① 산림청장 또는 지역산림병해충예찰·방제기 관의 장은 방제효과 검증과 방제방법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는 방제 이후에 방제효과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방제효과 조사의 시기 및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제56조(산림병해충 대응분석·평가) ① 산림청장은 산림병해충이 발생 한 지역에 대하여 산림병해충 대응의 문제점, 개선 방안 등을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석·평가하여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고, 지역산림병해충예찰·방제기관의 장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분석·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지역산림병해충예찰· 방제기관의 장은 그 결과를 관할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다음 연도 시·도시행계획 및 시·군·구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장 산림재난방지 기반조성

- 제57조(산림재난방지 기반시설의 설치)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산림재난방지를 위하여 임도, 사방댐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산림재난방지 기반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 제58조(산악기상관측망 구축·운영) ① 산림청장은 산림보호 및 산림 재난방지 등을 위하여 산악기상관측시설을 설치하는 등 전국적인 산악기상관측망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 ② 산림청장은 산림재난에 체계적·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산 악기상관측망 구축·운영 등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 행하여야 한다.
 - ③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산악기상관측망을 구축하여 기상관측업무를 수행할 때 「기상관측표준화법」 제4조제2항에 따른 기상관측기준을 따라야 한다.

- 제59조(산림항공기 운용) ①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에 따른 방지 및 지원을 위하여 산림항공기(「항공안전법」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항공기, 경량항공기, 초경량비행장치를 말한다)를 운영하여야 한다.
 - 1. 산림재난방지 활동
 - 2.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에 따른 숲길 이용 자의 조난·실종 및 추락 등의 사고 예방과 대응
 - 3. 「산림보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산림오염의 방지·정화 및 산림환경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 4.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산림사업 지원
 - 5.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산림사업의 현지확인·조사, 자재 및 인원의 수송
 - 6. 재난 또는 사고 발생 시 인명 구조 및 구호 활동
 - 7. 산불진화훈련 또는 헬기의 기능시험·이동·조종기술 훈련 등을 위한 비행
 - 8. 그 밖에 산림행정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 ② 제1항에 따른 산림항공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 부렁으로 정한다.
- 제60조(산림재난방지 교육) ① 산림청장은 산림재난방지 분야 전문인 력의 양성과 국민의 산림재난에 대한 의식을 기르고 필요한 지식을

언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산림재난방지 교육계획을 농림축산식품부렁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 1. 교육의 목표 및 운영 방향
- 2. 교육의 내용, 방법, 대상, 기간 등
- ②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농림 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재난방지 교육을 하여야한다.
- 1. 산림재난방지 담당 공무원
- 2. 산불재난특수진화대 및 산불전문예방진화대
- 3. 산사태 현장예방단
- 4.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
- 5. 그 밖에 산림재난방지 업무 수행을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에 고용 된 사람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산림재난방지 교육은 제62조에 따른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위탁할 수 있다.
- 제61조(연구개발사업 및 국제협력) ① 산림청장은 산림재난방지 및 피해경감을 위한 조사·연구·개발사업(이하 "산림재난방지 연구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산림재난방지 연구사업의 효율적인 추

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산림재난방지 연구사업을 위한 전문기관(이하 "산림재난방지 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 산림재난방지 연구사업을 수행하 게 할 수 있다.

- ③ 산림청장은 산림재난방지 연구사업과 관련된 공공기관·법인· 단체·대학(이들의 부설연구소 등을 포함한다. 이하 "산림재난방지 연구기관"이라 한다)의 인력·자금·시험시설 및 기술정보를 활용하 는 공동연구를 추진할 수 있다.
- ④ 산림청장은 산림재난방지 전문기관이나 산림재난방지 연구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⑤ 산림청장은 산림재난방지 전문기관이 제8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 ⑥ 산림청장은 산림재난방지 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2. 제5항에 따른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 ⑦ 산림청장은 제6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자(법인인 경우에는 그대표자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그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산림재난방지 전문기관으로 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⑧ 제2항,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산림재난방지 전문기관의 지정기준·지정절차, 시정명령 및 지정취소의 세부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⑨ 산림청장 또는 지방지차단체의 장은 산림재난과 관련한 국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관련된 기술·정보 및 교류, 홍보 및 조사 등에 대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으며 시책과 관련된 사업에 참여하는 학계·연구기관 및 기업체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① 산림청장 또는 지방지차단체의 장은 산림재난방지와 관련된 국 제협력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 하여금 해외자원개발 정보의 수집·분 석 및 제공 업무를 수행하게 하고 이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제7장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

- 제62조(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 설립 등) ① 산림청장은 산림재난방 지를 위한 연구·조사, 교육·훈련 및 기술·정보의 국제교류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이하 "공 단"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 ② 공단은 법인으로 하고,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

- 으로써 성립한다.
- ③ 이 법에 따른 공단이 아닌 자는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④ 그 밖에 공단의 설립인가 기준·절차 및 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63조(정관) ① 공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목적
 - 2. 명칭
 - 3. 주된 사무소, 지부, 그 밖의 사무소에 관한 사항
 - 4.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 5. 이사회에 관한 사항
 - 6. 업무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
 - 7. 자산 및 그 회계에 관한 사항
 - 8.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 9. 공고의 방법
 - 10. 규약・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 11. 그 밖에 공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공단이 정관을 제정・변경하려면 산림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제64조(임원 및 직원) ① 공단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 ② 임원의 임명에 대하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 조를, 임원의 임기는 같은 법 제28조를 준용하고 직원은 이사장이 임면한다.
 - ③ 이사장은 공단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하여 그 소속 공무원을 일정 기간 공단에 근무하게 할 수 있다.
 - ④ 제3항에 따른 교류근무를 위한 근무기간 등 세부사항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이사장이 협의하여 정한다.
- 제65조(임원의 결격사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 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단의 임원이 될 수 없다.
- 제66조(사업) ①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1. 산림재난방지 기본계획·시행계획
 - 2. 산림재난 조사 · 예찰 · 점검 및 산림재난방지에 관한 연구
 - 3. 산림재난 피해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
 - 4. 산림재난방지에 관한 교육・훈련
 - 5. 산림재난방지 기술 · 정보에 관한 국제교류
 - 6. 산림재난방지에 관한 행정기관의 위탁업무
 - 7. 산림재난방지 활성화와 관련한 교육 및 홍보

- 8. 국내외 산림재난방지 관련 단체와의 교류 및 협력
- 9. 산림재난방지 기반시설에 관한 조사·연구·평가·점검 및 안전 진단
- 10. 산림재난방지와 관련하여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이 위탁하는 사업
- 11.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공단에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③ 국가는 공단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국유재산법」,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유 재산 및 물품을 공단에 무상으로 양여 또는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있다.
- ④ 제3항에 따른 양여, 대부 및 사용·수익의 내용·조건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67조(공단의 운영비) 공단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 1.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 2. 공단의 사업으로부터 생기는 수입금
 - 3. 기부금
 - 4.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의 위탁사업 및 용역 수행에 따른 수입금

- 5. 그 밖의 수입금
- 제68조(예산과 결산) ① 공단은 사업연도마다 총수입과 총지출을 예산으로 편성하여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② 공단이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예산안을 회계 역도 개시 20일 전까지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공단은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결산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 결산을 확정하여야 한다.
 - 1. 재무제표(공인회계사나 회계법인의 감사의견서를 포함한다)와 그 부속서류
 - 2. 그 밖에 결산의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 으로 정하는 서류
 - ④ 공단은 매 회계연도의 결산 결과 이익금이 생겼을 때에는 이월 손실금의 보전에 우선 충당하고, 남은 이익금은 다음 회계연도로 이 월하거나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아 공단의 사업 수행을 위하여 사용 할 수 있다.
- 제69조(업무 지도·감독) ① 산림청장은 제6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공 단의 업무를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 ② 공단에 대한 산림청장의 지도·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0조(「민법」의 준용) 공단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8장 보칙

- 제71조(사상자에 대한 보상)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산림재난방지 또는 인명구조작업으로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에게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산림재난에 직접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72조(산림재난보험 등 가입) 산림청장은 산림소유자가 산림재난 등으로 손해를 입을 경우 이를 보전(補塡)할 수 있도록 산림소유자에게 산림재난보험(「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공제를 포함한다)에 가입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 제73조(포상) 산림청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자 및 기 관·단체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하거나 포 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1. 산림병해충의 피해나 발생 징후를 신고한 자
 - 2. 산불방지, 산불 발생의 신고 및 산불 관련 범법자의 신고·검거 에 공로가 있는 사람이나 기관·단체
 - 3. 산사태 피해나 발생 징후를 신고한 자
- 제74조(다른 사람의 토지 등에 출입 등) ①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산림재난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공무원 또는 산림재난방지유 관기관의 관계 직원에게 타인의 토지나 이에 붙어 있는 건물, 그 밖 의 인공구조물에 출입하거나 이를 잠시 사용하게 할 수 있으며, 부 득이한 경우에는 식물 등을 옮기거나 제거할 수 있다.

- ② 제1항 외에 토지의 출입 등에 관하여는 「산지관리법」 제47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 및 같은 법 제48조를 준용한다.
- 제75조(권리·의무 등 승계) ①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산림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 산림 외의 토지소유자 등에게 한 처분은 그 승계인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 ②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산림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이나 산림 외의 토지소유자 등이 한 신청·신고, 그 밖의 행 위는 그 승계인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 제76조(권한 등 위임 및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산림청장의 권한은 그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② 이 법에 따른 시·도지사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③ 이 법에 따른 지방산림청장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유림관리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산림청장 또는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의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1. 제23조에 따른 현지점검
- 2. 제36조제3항에 따른 산불자율진화대의 구성 및 설치
- 3. 제48조에 따른 산불 조사
- 4. 제51조에 따른 산사태 조사
- 5. 제54조에 따른 산림병해충 조사
- 6. 제55조에 따른 방제효과 조사
- 제77조(산림재난방지에 대한 문책 요구 등) ①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산림재난방지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때 지시를 위반하거나 주어진 임무를 게을리한 산림재난방지기관, 산림재난방지유관기관 소속의 공무원이나 직원의 명단을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관계 자료와 함께 그 소속 기관의 장 또는 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소속 기관의 장은 해당 공무원이나 직원을 문책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산림재난방지기 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 ③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항과 제2 항에 따른 사실의 증명에 필요한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④ 제1항 및 제2항의 통보와 제3항의 조사 및 문책요구의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⑤ 제1항에 따른 문책 요구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7조를 준용한다.
- 제78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64조에 따른 공단의 임직원과 제76조에 따라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이 위탁한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기관 등의 임직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 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9장 벌칙

- 제79조(벌칙) ① 타인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사람은 5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② 자기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③ 제2항의 경우 불이 타인의 산림에까지 번져 피해를 입혔을 때에는 2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④ 제22조를 위반하여 산사태취약지역에서 사방시설을 훼손하거나 사방시설을 설치·관리하는 것을 거부 또는 방해한 사람은 5년 이 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⑤ 과실로 인하여 타인의 산림을 태운 사람이나 과실로 인하여 자기 산림을 불에 태워 공공을 위험에 빠뜨린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⑥ 제23조제2항 및 제43조제3항제2호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
- 1. 제43조제3항제1호・제3호・제4호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사람
- 2. 제45조제3항을 위반하여 설계하거나 감리한 사람
- ⑧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제80조(과태료) ① 제62조제3항을 위반하여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 또는 이와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② 제20조제10항을 위반하여 위험표지를 이전하거나 훼손한 사람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제16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간 사람(같은 조 제2항제1호의 허가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 2. 제16조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농림축

산식품부렁으로 정하는 기간에 풍등 등 소형열기구를 날린 사람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만원 이하의 과 태료를 부과한다.

- 1. 제16조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산림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 초를 버린 사람
- 2. 제16조제3항을 위반하여 관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인접한 산림의 소유자·사용자 또는 관리자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불을 놓 은 사람
- 3. 제16조제4항의 금지명령을 위반하여 화기, 인화 물질, 발화 물질을 지니고 산에 들어간 사람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지방산림청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이 부과·징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단의 설립준비) ① 산림청장은 공단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이 법 공포일부터 30일 이내에 7명 이내의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 설립위원회(이하 "설립위원회"라한다)를 설치한다.

- ② 설립위원회는 공단의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 산림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③ 설립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연명으로 공단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 ④ 설립위원회는 공단의 이사장이 임명되면 지체 없이 그 사무를 이사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 ⑤ 설립위원회 및 설립위원은 제4항에 따른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산되거나 해촉된 것으로 본다.
-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산림보호법」에 따라 한 처분·신고 또는 그 밖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산림재난에 관하여 이 법에 따른 처분·신고 또는 그 밖의 행정기관에 대한행위로 본다.
- 제4조(장기계획·대책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산림보호법」 제20조에 따른 산림병해충 예찰·방제 장기계획,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산불방지장기대책과 같은 법 제45조의2에 따른 산사태예방장기대책은 이 법 제7조에 따른 산림재난방지 기본계획으로 본다.
- 제5조(연도계획·대책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산림보호법」 제21조에 따른 산림병해충 예찰·방제 연도별계획,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연도별 산불방지대책과 같은 법 제45조의3에 따른 산사태예방연도별대책은 이 법 제9조에 따른 산림재난방지

시행계획으로 본다.

- 제6조(방제명령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산림 보호법」 제24조에 따른 명령은 이 법 제43조에 따른 명령으로 본 다.
- 제7조(산림병해충 특별방제구역의 지정·해제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산림보호법」 제27조에 따라 지정·해제된 산림병해충 특별방제구역은 이 법 제46조에 따라 지정·해제된 산림병해충 특별방제구역으로 본다.
- 제8조(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해제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산림보호법」 제45조의8에 따라 지정·해제된 산사 태취약지역은 이 법 제20조에 따라 지정·해제된 산사태취약지역으 로 본다.
- 제9조(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 및 과태료를 적용할 경우에는 종전의 「산림보호법」에 따른다.
-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9호다목 중 "산림보호법"을 "산림재난방지법"으로 한다.

② 사방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2 및 제22조의3을 각각 삭제한다.

③ 산림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부터 제6호까지, 같은 조 제7호부터 제14호까지, 제20조, 제21조, 제21조의2, 제22조부터 제27조까지 및 제27조의2를 각각 삭제한다.

제4장(제28조부터 제45조까지)을 삭제한다.

제5장(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18까지)을 삭제한다.

제47조, 제48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50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53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제1항"으로 한다.

제54조제2항제4호 및 같은 조 제4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57조제2항, 같은 조 제3항제2호·제3호 및 같은 조 제4항을 각각 삭제한다.

④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제49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92. 「산림재난방지법」

제11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률에서 종전의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불·산사태·산림병해충에 관한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